

# 『구미시 금고지정 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』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## 2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(금고의 설치)에 의거 설치된 우리시의 금고 약정기간이 2009. 1. 1 ~ 2011. 12. 31로 만료됨에 따라
- 2012년 구미시 금고 지정을 위하여 “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금고신청 자격
  - 관련법 : 은행법 제2조, 제5조, 제8조에 의한 금융기관
- 금고선정방법
  - 경쟁방법
  - 수의방법
- 현재 금고지정 현황

(2011. 6. 30. 현재, 단위 : 백만원)

| 금 고 명 | 회 계 명     | 예 산 액     | 예 치 금 액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      | 계         | 1,042,061 | 125,225 |
| 대구은행  | 일 반 회 계   | 650,600   | 7,399   |
| 농 협   | 특별회계(12개) | 237,713   | 89,730  |
| ”     | 기 금 (10개) | 13,268    | 10,434  |
| ”     | 공기업 특별회계  | 140,480   | 17,662  |

### ○ 심의위원회 구성

- 인원 : 9명
  - 시 의회 의원 2,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관련분야전문가, 관계공무원

## ○ 추진계획

- 시의회 의견 청취 : 8월 말
- 기존 금고 제안서 제출(2011. 6. 30. 기준) 요청 : 8월 말
-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: 9월 10일 한
  - 수의방법(재지정)의결 : 금고지정 후 10일 이내 시보에 공고, 금융기관 통보, 약정체결
  - 경쟁방법 의결 : 금고약정 만료 3개월(2011. 10. 1)전까지 공고, 관련 금융기관 통보 및 경쟁방법으로 전환 추진

## 4. 참고사항

-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의견제시안은

-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설치된 구미시 금고의 약정기간이 2009. 1. 1일부터 2011. 12. 31일까지 3년간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
- 지난 5월 개정된 “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금고 재지정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

### ○ 검토결과

- 당초 경쟁방법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해 금고 재지정시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민원인에게 편의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,
- 재지정 금융기관의 경우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나 업무관리능력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, 또한 금고 재 지정으로 인해 타 금융기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.